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『공무원여비규정』 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,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계획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국내여비 가운데 정산제를 실시하던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정산제를 폐지하고 정액제로 전환 운영함(안 제4조 관련, 별표)

(단위 : 원)

구 분	운 임				숙박비 (1야당)
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(버스)운임	
제1호	1등급	1등급	정액	정액	46,000 (구청장은 실비로 지급)
제2호	2등급	2등급	정액	정액	30,000

참고 1.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은 『공무원 여비규정』 별표1의 규정에 의함.

2.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,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함.

3. 현행 운임은 철도·버스·항공 등 실비, 숙박비는 1호는 실비 2호는 4만원 한도에서 사후 정산

나. 여비의 정액지급과 별도로 구청장의 국내여비 가운데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함(안 제4조 관련, 별표)

다. 구청장 국외여비 지급의 등급 기준을 『공무원 여비규정』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의 “제2호”에서 “제1호 라목”을 적용하도록 규정함(안 제3조)

3. 조 례 안 : 따로 붙임

4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5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08. 7. 17 ~ 8. 6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나. 서울특별시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8.8.19)

다.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공무원여비규정”을 “「공무원 여비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”로, “제2호를”을 “제1호 라목을”로 각각 하고, 같은조제2항 중 “공무원여비 규정”을 “규정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제5조로 하고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「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」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,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2.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구청장”으로 본다.
3.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

4.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『관용차량관리규정』 제4조 및 동규정 별표1에 의한”은 없는 것으로 본다.
5. 제24조제5항중 “『국가공무원법』 제71조제2항”은 “『지방공무원법』 제63조 제2항”으로 본다.
6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7. 제29조제1항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동조 제2항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동조 제4항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8. 규정 [별표 1]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“「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」”은 “「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으로, “일반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”, “전문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4조 관련, 별표(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)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(버스)운임	숙박비 (1야당)
제1호	1등급	1등급	정액	정액	46,000 (구청장은 실비로 지급)
제2호	2등급	2등급	정액	정액	30,000

- 비고 : 1.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“공무원 여비규정”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2. 자동차(버스)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,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
3.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,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,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.
4.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</u></p> <p>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〔별표1〕 여비지급 구분표의 제2호를 적용한다.</p> <p>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〔별표1〕 여비지급 구분표의 각호를 적용한다.</p> <p>〈신 설〉</p> <p>제4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(이하 이 조에서 “규정”이라 한다)을 준용하되,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규정 제17조·제22조·제26조·제28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구청장”으로 본다</p> <p>2.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</p>	<p><u>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</u></p> <p>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----- 「공무원여비규정」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----- 제1호 라목을 -----.</p> <p>②----- ----- 규정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운임 및 숙박비 지급)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“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”에 의하여 지급한다.</p> <p>제5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,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2.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구청장”으로 본다.</p> <p>3.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본다.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3.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”는 “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”로 “동 규정 [별표1]”은 “동규칙(별표1)”로 본다</p> <p>4. 규정 제24조제5항중 “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”은 “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</p> <p>5.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6. 규정 제29조제1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7. 규정 [별표1]의 “여비지급 구분표”(이하 이 호에서 “동표”라 한다)의 구분란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“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은 “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”으로, 동 호의 해당 공무원란 4중 “공무원 보수규정”은 “지방공무원 보수규정”으로, 동표의 구분란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“전문직 공무원규정”은 “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”으로 한다.</p>	<p>4.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「관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동규정 별표1에 의한”은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5. 제24조제5항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으로 본다.</p> <p>6.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7. 제29조제1항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, 동조제2항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동조제4항중 “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8. 규정 [별표 1]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“「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」”은 “「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」”으로,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”으로, “「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은 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”으로, “일반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”, “전문계약직공무원”은 “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”으로 한다.</p>